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21

발의연월일: 2025. 5. 14.

발 의 자: 강경숙・이병진・김문수

황운하 · 서왕진 · 신장식

용혜인 • 유종오 • 전종덕

정춘생 · 차규근 · 한창민

이해민 • 백승아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써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의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한편,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 등 교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교육공무원 적용을 배제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공무원의 휴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18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1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0520호) 및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관련하여 선 거운동을 하려는 경우

제45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44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로 한다.

제53조제5항 중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를 "제42조제2항, 제50조, 제65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57조제4항 중 "제40조 및 제74조"를 "제40조, 제57조, 제74조 및 제82조"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4조"를 "제57조,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및 제8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사유 및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13호·제14호 및 제45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교육감선거 관련하여 선거운동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	제44조(휴직)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	
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	
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	
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입
	<u>후보하려는 경우</u>
<u> <신 설></u>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관련
	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 </u>	12. 제44조제1항제13호 또는 제
	1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②・③ (생 략)

-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 계) ① ~ ④ (생 략)
 - (중)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 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 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u>제42조 제2항 및 제50조</u>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 계)① ~ ③ (생 략)
 - ④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부터 제

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
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2조제2항, 제50조, 제65
조 및 제84조
<u> </u>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
세리고(시장 6 구천 입 나
게) ① ② (처체되 가야)
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29조의5까지, 제30조, 제30조의 2,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2, <u>제40조 및 제74조</u>는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 계) ①·② (생 략)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부 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 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 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 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u>제67조제2</u> 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4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u>4</u> 14
	0조, 제57조, 제74조 및 제82조
الح	 C1 フ / 「키바고 및 이 비 - 코 이 - 코
셰	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 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57조,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
	까지, 제74조 및 제82조
	•